
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 시행(19.1.1.)에 따른

“화학물질 등록 등 면제확인” 제도 안내



화학물질 등록 등 면제확인 제도 안내

화학물질 등록 등 면제확인 제도 정의(화평법 제11조)
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(이하 ‘화평법’)」 개정(’19.1.1.시행)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은 등록 또는 신고* 하여야 함. 그러나 법 제11조에 해당하는 물질은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코자 등록 및 신고를 면제하고 있음. 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는 사유에 따라 “당연면제”와 “확인 후 면제”로 구분됨.

* 등록 : 연간 100 킬로그램 이상 신규화학물질,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
신고 : 연간 100 킬로그램 미만 신규화학물질

화학물질 등록 등 면제확인 대상(화평법 제11조, 시행령 제11조)

1. “당연면제”란 별도의 절차 없이 등록 또는 신고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아래의 화학물질에 해당함
 - ① 기계에 내장(內藏)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
 - ② 시험운전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
 - ③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
 - ④ 위해성이 매우 낮은 화학물질(환경부고시 제2018-234호)



2. “확인 후 면제”란 화평법 시행령 제11조의 용도(아래 참조)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 확인을 신청하여 환경부 장관(한국환경공단)에 확인을 받음으로써 등록 또는 신고가 면제되는 것

- ①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
- ②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한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
- ③ 시약 등 과학적 실험·분석 또는 화학연구를 위한 화학물질
- ④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
 - ㉠ 화학물질 또는 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
 - ㉡ 생산공정을 개선·개발하기 위한 경우
 - ㉢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
 - ㉣ 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제품 등의 시범생산을 위한 경우
- 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분자화합물(시행령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상아님)
 - ㉠ 수평균분자량이 1만 이상인 고분자화합물로서 분자량 1천 미만 분자의 함량이 5% 미만, 분자량 500미만 분자의 함량이 2% 미만인 것
 - ㉡ 수평균분자량이 1천 이상에서 1만 미만인 고분자화합물로서 분자량 1천 미만 분자의 함량이 25% 미만, 분자량 500 미만 분자의 함량이 10% 미만인 것
- ⑥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 표면의 작용기와 그 물질의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을 반응시켜 생성된 화학물질로서,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과 그 물질의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이 모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㉠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
 - ㉡ 등록유예기간 이내의 기존화학물질로서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화학물질
 - ㉢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된 화학물질
 - ㉣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록대상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 대상이 아닌 화학물질
- ⑦ 비분리중간체
- ⑧ 기술적인 방법으로 유출 또는 노출이 차단되어 있는 현장분리중간체

3. 등록 등 면제확인 제외대상(시행령 제11조제2항)

- ① 양이온성 고분자화합물(고체 상태로만 사용되고, 물에 녹지 아니하거나 분산되지 아니하는 고분자화합물은 제외)
- ② 수평균분자량이 1만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인 미반응 단량체가 0.1중량퍼센트 이상 함유된 고분자화합물
 - ㉠ 유해화학물질
 - ㉡ 중점관리물질
 - ㉢ 신규화학물질(연간 1톤 이상 제조·수입하려는 것으로서 법 제18조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경우는 제외)

화학물질 등록 등 면제확인 변경신청(화평법 제11조제3항, 시행규칙 제7조의2)

1. 아래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의 이사장에게 변경신청

- ① 연구개발용 화학물질로서 연구개발에 드는 기간, 제조·수입예정량, 연구기관이 변경된 경우
- ② 표면처리 화학물질로서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 또는 그 물질의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이 해당하는 목(㉠~㉢)이 변경된 경우
- ③ 선임된 자가 면제확인 받고, 해당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
- ④ 제조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신하여 면제확인 받고, 수탁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

2.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(kreachportal.me.go.kr)에서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변경 신청

- ①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② 제7조제1항제1호의 자료 중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
- ③ 화학물질 등록 또는 신고 면제확인 신청결과 통지서 원본

3. 법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 등 면제확인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

화평법 개정('19.1.1.시행)에 따른 등록 등 면제확인 신청 절차 및 방법

화학물질 확인

- NCIS 화학물질정보시스템 접속 (<http://ncis.nier.go.kr>)
- '화학물질통합검색'에 화학물질명 또는 CAS 번호 입력하여 검색
- 기존화학물질 등재 여부 확인 (고시번호 존재 여부 확인)

화학물질 등록 등 면제 대상 확인

- 화평법 시행령 제11조 해당 여부
 - 전량수출용(연(年)단위) - 시약 등 과학적 실험·분석·연구(최초 1회) - 연구개발용(연구개발계획 단위)
 - 저우려 고분자화합물(최초 1회) - 표면 처리된 화학물질(최초 1회) - 비분리·분리 중간체(최초 1회)
- 위 조항 외의 용도는 등록 또는 신고 신청 대상

화학물질 제조·수입량 범위 확인

- 기존화학물질 연간 1 톤 이상 → 등록면제확인 신청
- 신규화학물질 연간 100 킬로그램 이상 → 등록면제확인 신청
- 신규화학물질 연간 100 킬로그램 미만 → 신고면제확인 신청

등록 등 면제확인 신청서 작성 (등록면제와 신고면제의 제출 서류는 동일)

-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회원가입 (<https://kreachportal.me.go.kr>)
- 등록 등 면제 > 신규작성 → 온라인 신청서 작성
- 제출서류
 - 공통 : 시행규칙 별표 5 자료 (등록 등 면제확인 사유별로 다를 수 있음)
 - 화평법 제38조에 따른 선임된 자 : 선임사실신고증
 - 화평법 제42조에 따른 자료보호 신청
 - : 동질성자료(화학물질명, 분자식, 구조식), 국내외 등재 정보 확인 가능한 자료
 - 화학물질 제조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신 신청 : 위·수탁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제출
 - 화학물질의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 : STN 또는 SciFinder 검색결과, 제조사 확인서 중 하나 제출
 -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수수료 감면 대상자
 - :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최근 3개년의 매출액과 자산총액 자료

등록 등 면제확인 신청 결과통지서 발급

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5일 이내 신청인에게 통지(단, 현장확인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14일 이내 통지)

